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배현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23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10.

발 의 자 : 배현진 · 권영세 · 김성원
김형동 · 박대수 · 윤영석
추경호 · 태영호 · 홍준표
황보승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스포츠 분야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훈련을 위한 스포츠의·과학 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. 특히 국가대표 선수의 경우 지도자의 전문기술 지도 이외에도 체력측정 및 컨디션 조절, 스포츠 역학, 스포츠심리, 동작 및 기술 분석, 스포츠영양, 스포츠의학, 건강상태 및 생활상담 등 종합적인 밀착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.

현재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의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선수촌을 건립하여 국가대표 종합관리 및 훈련을 지원하고 있음.

그러나 국가대표 선수의 체력과 경기력에 대한 측정데이터는 국가대표선수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, 수요처이자 훈련주체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사업을 수행하여 효과적인 데

이터 확보와 직접적인 스포츠과학 훈련지원이 어려운 상황임.

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의·과학적 통합지원체계인 측정, 진찰, 치료, 재활, 강화훈련 과정에서 측정 부분만 별도로 운영되다보니 효과적인 훈련목표 달성이 어렵고,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의 훈련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단체와 체력측정 기관이 상이하다보니 행정 및 예산의 비효율성을 낳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따라서,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과학 훈련지원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직접적·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국가대표선수촌 관리 및 스포츠의·과학 훈련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국가대표 선수의 효과적인 훈련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제33조 및 제34조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에 제5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6. 국가대표선수촌 관리 및 스포츠의·과학 훈련 지원

제34조제1항에 제5호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국가대표선수촌 관리 및 스포츠의·과학 훈련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대한체육회) ① 체육 진흥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 다)를 설립한다. 1.·5의5. (생략) <u><신설></u> 6. (생략) ② ~ ⑧ (생략)	제33조(대한체육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·5의5. (현행과 같음) <u>5의6. 국가대표선수촌 관리 및</u> <u>스포츠의·과학 훈련 지원</u> 6. (현행과 같음) 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34조(대한장애인체육회) ① 장 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 체육회(이하 “장애인체육회”라 한다)를 설립한다. 1.·5. (생략) <u><신설></u> 6. (생략) ② ~ ⑨ (생략)	제34조(대한장애인체육회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·5. (현행과 같음) <u>5의2. 국가대표선수촌 관리 및</u> <u>스포츠의·과학 훈련 지원</u> 6. (현행과 같음) ② ~ ⑨ (현행과 같음)